





보

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61호 2022. 9. 19.(월)

공 고

○「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(수정)입법예고 ---- 2

회람				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공고 제2022- 1507호

「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(수정) 입 법 예 고

「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(수정)공고합니다.

2022. 9. 19.

목 포 시 장

1. 제정이유

- ○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O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 · 운용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O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등 (안 제2조 ~ 제6조)
- O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(안 제7조)
-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· 운용 (안 제8조 ~ 제23조)
- O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규정 (부칙)
- 3. **조례제정안** : 붙임

시

卭

4. 관계법령

- ○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
- ○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목

5. 관련부서 의견

O 예산사항 : 별도 예산조치 해당없음

O 부패영향분석평가(감사실) : 해당없음

O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의견없음

O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 : 의견없음

6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9. 19 . ~ 2022. 10. 11. (22일간)

7. 사전협의(승인) 사항: 해당없음

8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1일까지 목포시장(세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 소 및 전화번호
- O 기타 참고사항

나.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이메일, 직접 방문

목

- 다. 의견제출처 : 목포시청 세정과 (세정팀)
 - 주소 : (우 58613)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(용당동)

埾

- 전화 : 061-270-3282, 팩스 : 061-270-3580
- 이메일 : withme10@korea.kr

11. 기타사항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mokpo.go.kr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(☎ 061-270-328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	례	명	:	「목포시	고향사랑	기부금	모금	및	운용에	관한	조례
-----	---	---	---	------	------	-----	----	---	-----	----	----

○ 성명(단체명):

O 주 소:

O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	
조네(한) 왕독철 대통	찬성	반대	의전(사TT)	714 414	

「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정 조례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· 운영 등

- 제2조(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.운영) ①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소속으로 목포시 답례품 선정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품목 선정
 - 2.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
 - 3. 기타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·위촉하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: 고향사랑 기부 업무 부서장, 답례품 관련 업무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

- 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.위촉한다.
- 가.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
- 나.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
- 다.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
- 라. 상품.유통.홍보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
- 마.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-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기타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6조, 제18조부터 제19조,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조(답례품의 종류)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、채취된 농산물、축산물、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 산품 등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.제조한 물 품 및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으 로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.
 - 1.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(유기농수산물, 무농약농산물, 무항생제수산물 등) 및 유기식품 등
 - 2. 「축산법」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
 - 3.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(HACCP)을 받은 축산물

- 4.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통주
- 5.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
- 6.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
- 7.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
- 8. 목포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
- 9.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비율이 50% 이상인 품목
- 10. 목포시의 마을기업, 사회적 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
- 11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
- 12. 목포시 지역사랑 상품권, 관광 입장권 등 목포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
- 13. 기타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·운영하는 각종 서비 스의 상품
- 제4조(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)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 - 1.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
 - 2. 답례품의 보관·상품화·품질관리·배송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
 - 3.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 저조 기반의 보유 여부
 - 4. 최근 3년간 생산.공급 실적 및 매출액

- 5.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
- 6. 국가 · 전라남도 · 목포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
- 7. 목포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
- 8.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(단, 원재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타지역 생산 농산물.축산물.수산물 및 임산물 사용 가능)
- 9.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, 목포시.전라남도 및 민간업체 등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·판매 여부
- 10.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)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 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 - 1.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
 - 2.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
 - 3.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
 - 4. 기타 목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.
- **제6조(답례품비의 지급)**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- 제7조(지정 금융기관의 위탁) 시장은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.
 - 1.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
 - 2.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
 - 3.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
 - 4.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
 - 5.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

제3장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· 운영 등

- 제8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)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 - 2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
- 제9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 - ② 기금은「지방회계법」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・관리한다.
 -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제10조(기금의 사용 목적)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·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- ② 시장은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.
- 제11조(기금운용관)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.
 - 1. 기금운용관: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

목

- 2. 기금출납원 :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
-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) 시장은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함)은 목포시 부시장이 되고, 심의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: 부시장, 고향사랑 기부금 또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
 - 2. 위촉직 위원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회계사,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

- 나.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
- 다.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

목

- 제1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
 - 2. 질병, 사망,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 - 3.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
 - 5.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
- 제1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7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

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목

-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,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.
-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 - 2.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
 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
 -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
- 제1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

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5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- 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,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위원회의 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.
 -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- 1.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 - 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· 보존
 - 3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제20조(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,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

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또한,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·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- 제21조(위원의 수당 등)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2조(기금 운용계획의 수립)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- 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목

玊

- 3.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23조(기금의 결산)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.
 - 1.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
 - 2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 - 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 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, 우선 답례품의 선정,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용 및 제22 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 -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・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.
- 제3조(기부금 모집·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)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제4조(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.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,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